

행 정 자 치 부

징계·훈계 요구

제 목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징계대상자 경상남도 ○○○○과 지방○○○○○(○○○○○) ○○○

※ 훈계대상자 ① 경상남도 ○○○○과(전 ○○과) 지방○○○○○ ○○○

② 경상남도 ○○○○○○소(전 ○○과) 지방○○○○○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는 2016. 1.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 ○○은 2014. 7. 14.부터 2016. 7. 6
까지, 지방○○○○○ ○○○은 2014. 1. 3.부터 2016. 7. 6까지 각각 ○○업무실
무책임자, 담당책임자로서 근무하였다.

1. 결원이 없는 교수요원(지방○○ *급) 채용계획 수립·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⁹⁾되어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 ○○부장 등의 근무기간 만료 및 결원에 따른 후속 인력 충원을 위하여 2015년 제*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원이 없는 ○○○○원 ○○요원으로 지방○○○○*급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2015. 12. 3 결재를 득한 후,

2015. 12. 3. 공고와 2016. 1. 5. 면접시험을 거쳐 2016. 1. 11. ○○요원으로 지방○○*급 ○○○을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환경교육원의 직급별 정·현원이 불부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소속	계(단위 : 명)	직급	직렬	정원	현원
○○○○원	일반직 6명	5급	환경	1	1
		6급	행정	1	1
		7급	행정	3	1
		8급	보건	1	보건 1, 행정 2

※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2.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누락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9) ○○○○원 6명(환경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3, 보건8급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자진퇴직수당 및 법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 등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2015년 제*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사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심의과정 없이 2015. 12. 3.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내부결재만을 득한 후 공고 등을 과정을 거쳐 동 채용업무를 추진하였다.

3. 규정과 다르게 임용자격 공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XI.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자격 요건- 규정상>

계급	임용자격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상남도에서는 2015년 제*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추진하면서 지방임기제 *급, ○○○○○○○○○요원의 임용자격을 규정과 다르게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공고하였으며

지방○○*급, ○○사의 경우 ○○사와 ○○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과다하게 임용자격을 제한하였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자격 요건 - 공고상>

계급	임용분야	임용자격
*급	○○○○ ○○○○ 요원	1. <u>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u>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분야 관련 근무경력 ※ 관련분야 학위(학과) : ○○·○○·○○ 등 ○○계열 관련 학과
*급	○○사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와 ○○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경상남도에서는 2015년 제*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추진하면서 ○○○○○○○○○요원(○○○○제, 지방○○*급) 응시자로 ○○○ 등 5명이 응시하여 2015. 12. 22. 개인별 서류전형 심사와 2016. 1. 6. 면접시험을 거쳐 2016. 1. 12. ○○○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였으나,

합격자인 ○○○의 경우, 2014년 ○○대 대학원 ○○○분야 ○○학위 소지

자로 잘못 공고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로 처리하였다.

4.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¹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요원(지방○○*급, ○○○○제)으로 최종 합격된 ○○○○(2년 계약 : 2016. 1. 21. ~ 2018. 1. 20)는 당초 잡지 및 ○○○○○ ○○업으로 산업분류된 ○○○○○(주)¹¹⁾의 ○○부 ○○국장 및 ○○○로 2005. 9. 1.부터 2015. 12. 31.까지 활동하다가 2015. 12. 31자로 퇴사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주) 재직여부 재확인 결과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 허가 없이 2016. 8. 1.부터 다시 ○○○로 겸직 활동하면서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0)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业体)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11) 설립일 2006. 1. 9. / 소기업 / 일반법인 / 창원시 ○○구 ○○로***번지 소재

조치할 사항 경남도지사는

[징계] 위 관련자 중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 ○○○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소속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 검직 활동을 하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